

수원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가단5018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근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랑

담당변호사 김광희

3. D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3. 11.

주 문

1. 피고 B, C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4.부터 피고 B은 2020. 1. 21.까지, 피고 C은 2020. 2. 4.까지 연 5%, 각 그다음날부터 2021. 3.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2019. 10. 2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한다.
 -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3. 접수 제116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 C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9. 3.까지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피고 C과 F은 E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후 E 등이 2015. 9. 3.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 C과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5. 11. 20. 원고에게 액면금 1억 8,500만 원, 지급기일 2016. 1. 23.,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모두 성남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5. 12. 1.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H 2015년 제448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6. 1. 23. 피고 B 등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이천시 I 임야 2,513㎡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2019. 10. 21. 동생인 피고 D에게 대물변제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고 한다), 2019. 10. 23.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8, 9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어음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6. 1. 23.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6. 1. 23.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0. 1. 13.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7. 12. 13. 변제를 독촉하는 원고에게 '올해는 어렵고,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 피고 C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변제 등 항변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D이 2020. 8. 5.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이자 피고 B이 운영하는 G이 2015. 12. 9. 원고의 배우자인 J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변제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위 3,000만 원의 변제 항변이 인정된다면, 위 3,0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겠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충당이 피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G의 공장부지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E이 2016년과 2017년에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남은 어음금 1억 5,500만 원(= 1억 8,5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피고 B은 2020. 1. 21.까지, 피고 C은 2020. 2. 4.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어음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예비적 청구인 준소비대차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 중 하나인 피고 D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 내지는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익자인 피고 D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자신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몰랐고, 피고 B이 사채 등 채무가 많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이 강제집행 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 D이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대위변제금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과 피고 D이 형제지간인 점,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이천시 I 임야 2,513㎡ 중 각 1/3 지분권자로 위 각 부동산 등을 피고 B과 공유하고 있는데, 2018. 6.경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던 점, 피고 D 스스로도 당시 피고 B에게 많은 채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피고 B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

<별지>

목 록

1. 서울시 노원구 대 123.1㎡

2. 서울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서울시 노원구

백동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층 66.45㎡

2층 66.45㎡

지층 66.45㎡

옥탑 9.0㎡, 꺾.

1) 이하 2.항에서는 피고 B, C을 통틀어 칭할 때 ‘피고들’이라고만 한다.